

 <p><b>거창군</b>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공 보</h1> <p>제842호 2022. 1. 26.(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훈 령**

거창군 훈령 제455호 거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 ..... 3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2-7호 소하천의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 10

거창군 고시 제2022-8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21

거창군 고시 제2022-9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 ..... 32

거창군 고시 제2022-14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궤도 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33

거창군 고시 제2022-17호 도로명주소 고시 ..... 36



거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

서명생략

2022년 1월 26일

거창군 훈령 제455호

### 거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거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거창군수(이하 “군수”)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간이 운동기구를 포함하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 관련 부서를 말한다.
4. “설치부서”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해당 시설물이 소재한 지역의 읍·면사무소 장을 말한다. 다만,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서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수가 이 규정에 따라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4조(설치장소)** ①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② 설치부서의 장이 하천부지, 산지, 농지, 도로부지 등 개별법에 따라 이용 및 개발이 제한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설치부서의 장은 기존에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로 선정하되, 현지조사 및 검토 후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시설의 보수 및 유지 위주로 관리한다.
-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바닥 및 기구 간 안전거리는 충분히 확보하여 설치한다.
- ④ 야외운동기구의 흔들림이나 빠짐이 없도록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6조(유지관리)** ①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1. 총괄부서의 장: 매년 운동기구의 안전관리 점검계획 수립
  2. 관리부서의 장: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
-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등 이상 발견시 즉시 정비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③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변경 현황을 수시 또는 매년 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야외 운동기구관리시스템 입력) ① 설치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보수·철거·이설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야외운동기구 관리 시스템에 입력·관리해야 한다.

제8조(안내 표시문)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붙여야 한다.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설치 완료된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 운동기구는 이 규정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별표]

안내 표시문 (제8조 관련)

<b>운동기구 안내</b>	
총괄부서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관리번호	거창읍 0 - 0
연 락 처	055) 940- 8732, 8720
<b>운동기구의 파손 및 불편한 사항은 위의 전화 번호로 신고하여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겠습니다.</b>	
<b>체육시설사업소장</b>	

[별지 제1호서식]

## 야외 운동기구 점검 대장

순번	관리번호	시설명	야외운동기구 명	설치년도	위치	점검결과	그 밖에 사항

○ 점검 체크 리스트

- 야외운동기구 운동방법, 주의사항, 안내문 등 훼손 여부
-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 흔들림 등 구조적 안정성 여부
- 목재부분의 부식, 금속재질의 부식 발생 여부
- 손잡이 흔들림 또는 파손, 볼트나 나사 풀림 상태
- 야외운동기구 바닥표면 상태, 기구 및 주변 청결 제반 운동 여건 등

[별지 제2호서식]

## 야외 운동기구 관리카드

- 시설명 : 0000000 야외 운동기구
- 시설위치 : 거창군 거창읍 00000로 0000
- 시설소유자 : 거창군수
- 관리부서 :
- 시설규모

토지 소유자	운 동 기 구			이용 주민수	비 고
	종	점	세부내역		
거창군					

### ○ 사업비 투자실적

(단위: 천원)

구 분	총 사업비	사 업 비 구 성			년도별 투자액					비고
		부 지 매입비	시 설 공사비	그밖에 사항	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계										
군 비										



○ 시설이력

최 초 설치일	최 초 준공일	증·개축 및 주요 보수 현황				비고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사업비		천원				

○ 조망사진(전체적인 조망 사진)

○ 현장사진(운동기구 1점 사진)

제조사:      운동기구 명칭:	제조사:      운동기구 명칭:

## 소하천의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거창군 고시 제 2022-7호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변경·폐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1일

### 거창군수 (인)

수계 (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지정 (변경·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낙동강	운정천	거창읍 송정리 661	거창읍 송정리 258-1	1,700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해 변경함
	새담천	거창읍 송정리 산80	거창읍 송정리 882-1	714	
	덕곡천	거창읍 송정리 1002	거창읍 송정리 77	950	
	중산앞천	거창읍 장팔리 산294-12	거창읍 장팔리 1462-1	651	
	웅곡천	거창읍 장팔리 1289-2	거창읍 장팔리 1092-1	813	
	사동뒀골천	거창읍 서변리 107	거창읍 서변리 1147-124	840	
	뱀골천	거창읍 서변리 136-1	거창읍 서변리 320-16	1,050	
	죽동천	거창읍 동변리 1218	거창읍 동변리 183	1,500	
	내학천	거창읍 학리 11	거창읍 학리 1127	1,110	

수계 (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지정 (변경·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낙동강	법치골천	거창읍 학리 산184	거창읍 학리 1047-75	800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해 변경함
	구례천	거창읍 학리 751	거창읍 학리 1047-141	1,142	
	노혜천	거창읍 양평리 718-29	거창읍 양평리 1239-43	1,625	
	중촌천	거창읍 가지리 1484-13	거창읍 가지리 1442-3	1,340	
	지내천	거창읍 가지리 산252-2	거창읍 가지리 952-4	1,100	
	만추골천	거창읍 가지리 1660-1	거창읍 가지리 958-3	1,660	
	도평천	주상면 도평리 206	주상면 도평리 562	910	
	임실천	주상면 연교리 산168	주상면 연교리 282	1,730	
	사도동천	주상면 연교리 834	주상면 연교리 1171-20	780	
	독골천	주상면 완대리 28	주상면 완대리 781-2	1,000	
	넙터천	주상면 완대리 1105	주상면 완대리 131-2	465	
	홍석동천	주상면 성기리 273-1	주상면 성기리 375	537	
	성기천	주상면 성기리 30-1	주상면 성기리214-1	1,202	
	미기들천	주상면 성기리 475-4	주상면 성기리 714-20	1,013	
	원거기1천	주상면 거기리 266	주상면 거기리 830-2	1,120	
	내장포천	주상면 거기리 42	주상면 거기리 1158-2	2,500	
	덕동천	주상면 남산리 산132-4	주상면 남산리 422-1	947	
	한기천	웅양면 한기리 703	웅양면 한기리486	2,220	
	장지천	웅양면 신촌리 835	웅양면 한기리 476	2,056	
	왕암천	웅양면 신촌리 1535	웅양면 한기리 473-1	2,150	
왕암위천	웅양면 신촌리 564	웅양면 신촌리 462-5	660		
개화천	웅양면 신촌리 1604	웅양면 신촌리 175	2,210		

수계 (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지정 (변경·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낙동강	하곡천	웅양면 한기리 167	웅양면 한기리 585	673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해 변경함
	송산천	웅양면 군암리 980-2	웅양면 군암리 355-1	755	
	군암천	웅양면 군암리 923	웅양면 군암리 462	573	
	금광천	웅양면 산포리 436	웅양면 산포리 1045-6	736	
	산포천	웅양면 산포리 1565-3	웅양면 산포리 1807-1	600	
	노현천	웅양면 노현리 907	웅양면 노현리 263-3	1,640	
	화동천	웅양면 노현리 1278	웅양면 노현리 272-3	1,350	
	죽림천	웅양면 죽림리 961	웅양면 죽림리 262	1,650	
	유령천	웅양면 죽림리 산 76-6	웅양면 동호리 1313-6	1,709	
	동호숲천	웅양면 동호리 88-2	웅양면 동호리 1068	1,230	
	동호천	웅양면 동호리 184-1	웅양면 동호리 1077	1,584	
	성북천	웅양면 동호리 192	웅양면 동호리 1236-3	1,750	
	원농산천	고제면 농산리 453	고제면 농산리 355-1	543	
	금계천	고제면 농산리 산53-1	고제면 농산리 339-3	858	
	진개울천	고제면 농산리 1019	고제면 농산리 992	685	
	손항천	고제면 농산리 1704	고제면 농산리 1189-3	1,892	
	괘암천	고제면 개명리 986	고제면 개명리 99-4	1,400	
	수류천	고제면 개명리 산293	고제면 개명리 678	650	
	상개명천	고제면 개명리 8	고제면 개명리 653-3	1,400	
	하수내천	고제면 개명리 1339-4	고제면 개명리 1688-3	1,040	
삼포천	고제면 개명리 2182	고제면 개명리 1789	672		
봉계천	고제면 봉계리 산115	고제면 봉계리 385	670		

수계 (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지정 (변경·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낙동강	중봉계천	고제면 봉계리 518	고제면 봉계리 359-1	680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해 변경함
	원봉계천	고제면 봉계리 475-3	고제면 봉계리 41-1	1,140	
	와룡천	고제면 봉산리 1663-1	고제면 봉산리 440-1	743	
	와룡2천	고제면 봉산리 1916-1	고제면 봉산리 790-1	1,065	
	삼봉천	고제면 봉산리 산264-1	고제면 봉산리 620-1	1,980	
	용초천	고제면 봉산리 2162	고제면 봉산리 610	2,200	
	송지천	고제면 봉산리 238	고제면 봉산리 589	473	
	송지2천	고제면 봉산리 163	고제면 봉산리 599	720	
	학림천	고제면 궁항리 1663	고제면 궁항리 933	808	
	매학천	고제면 궁항리 611	고제면 궁항리 816-4	800	
	궁항천	고제면 궁항리 86	고제면 궁항리 1121	1,400	
	성골천	북상면 갈계리 1337-4	북상면 갈계리 1252	580	
	목계천	북상면 갈계리 1286	북상면 갈계리 1468-1	1,047	
	천곡천	북상면 갈계리 13	북상면 갈계리 1439-1	1,350	
	중산천	북상면 갈계리 116-1	북상면 갈계리 613-2	1,400	
	신기1천	북상면 소정리 519	북상면 소정리 288	600	
	청아천	북상면 소정리 651	북상면 소정리 683-1	600	
	갈항천	북상면 소정리 40	북상면 소정리 674	1,650	
	당산1천	북상면 소정리 958	북상면 소정리 1350-1	900	
	월암천	북상면 소정리 1683	북상면 소정리 1364	902	
	강선대천	북상면 농산리 523	북상면 농산리 570	564	
병곡천	북상면 병곡리 925-5	북상면 병곡리 776-1	576		

수계 (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지정 (변경·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낙동강	삼산천	북상면 산수리 1374	북상면 산수리 311-3	1,534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해 변경함
	심동천	북상면 월성리 135	북상면 월성리 50-1	1,352	
	양지상천	북상면 월성리 1339-2	북상면 월성리 1091-1	740	
	황점천	북상면 월성리 1828	북상면 월성리 1713	650	
	가현천	위천면 남산리 561	위천면 남산리 248-1	2,304	
	금능천	위천면 남산리 609	위천면 남산리 521	1,220	
	강남천	위천면 상천리 산37-2	위천면 상천리 641	1,055	
	덕거천	위천면 상천리 817	위천면 상천리 442-2	550	
	면동천	위천면 강천리 768-6	위천면 강천리 829	1,360	
	강천천	위천면 강천리 584-1	위천면 강천리 93-9	2,240	
	뜸북천	위천면 황산리 321	위천면 황산리 833	733	
	황산천	위천면 황산리 254-2	위천면 황산리 77	1,720	
	당산2천	위천면 당산리 462	위천면 당산리 481	1,000	
	당산세천	위천면 황산리 16	위천면 당산리 780	1,590	
	모전천	위천면 모동리 622	위천면 모동리 912-3	1,827	
	영승천	마리면 영승리 96-2	마리면 영승리 1224-4	950	
	풍계천	마리면 율리 58	마리면 율리 91-1	950	
	월화천	마리면 월계리 1246	마리면 월계리 435	2,044	
	학동천	마리면 월계리 1001	마리면 월계리 216-1	1,600	
	토점천	마리면 월계리 875-1	마리면 월계리 113-4	1,050	
말흘천	마리면 말흘리 1068	마리면 말흘리 353-2	1,300		
송림천	마리면 말흘리 898	마리면 말흘리 777-1	700		

수계 (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지정 (변경·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낙동강	고대천	마리면 고향리 484	마리면 고향리 770	1,250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해 변경함
	상촌천	마리면 고향리 산149	마리면 고향리 1108-1	2,612	
	고신천	마리면 고향리 1325	마리면 고향리 1108-1	1,000	
	엄대천	마리면 대동리 1611	마리면 대동리 603	2,120	
	고창천	마리면 하고리 산189	마리면 하고리 96-1	1,942	
	계동천	마리면 영승리 산82-1	마리면 영승리 272	700	
	내춘천	남상면 춘전리 207	남상면 춘전리 70	886	
	진목천	남상면 진목리 413	남상면 진목리 532	681	
	남진천	남상면 둔동리 387-1	남상면 둔동리 413	500	
	가골천	남상면 둔동리 산94	남상면 둔동리 1683	1,297	
	외등천	남상면 오계리 산140-1	남상면 오계리 1007	1,160	
	둔동천	남상면 둔동리 1000	남상면 둔동리 1614	817	
	지하천	남상면 무촌리 1664	남상면 무촌리 413-1	1,746	
	각골천	남상면 대산리 572-1	남상면 대산리 336-1	1,151	
	청림천	남상면 대산리 산131	남상면 대산리 1354-14	802	
	한산천	남상면 대산리 520	남상면 대산리 1034	1,363	
	월평천	남상면 월평리 산173-5	남상면 월평리 2226	3,122	
	평촌천	남상면 월평리 1564-72	남상면 월평리 2112	1,250	
	월포천	남상면 임불리164	남상면 임불리 601	1,068	
	정골천	남하면 둔마리 252	남하면 둔마리 744-2	531	
대촌천	남하면 둔마리 349	남하면 둔마리 776	1,420		
안흥천	남하면 둔마리 1457-3	남하면 둔마리 1277	1,163		

수계 (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지정 (변경·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낙동강	아주천	남하면 양항리 36	남하면 양항리 58	553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해 변경함
	대곡소천	남하면 양항리 453	남하면 양항리 968	700	
	십지천	남하면 무릉리 812	남하면 무릉리 861-3	469	
	양곡천	남하면 무릉리 796-1	남하면 무릉리 866-3	555	
	무릉천	남하면 무릉리 1227	남하면 무릉리 1092-2	650	
	무릉2천	남하면 무릉리 1259	남하면 무릉리 1337	594	
	월곡천	남하면 무릉리 176	남하면 무릉리 498	2,576	
	대야천	남하면 대야리 1115	남하면 대야리 776	1,854	
	자하천	가조면 지산리 1565	가조면 지산리 1304	618	
	신기2천	가조면 지산리 2039	가조면 지산리 1054-2	1,727	
	장전천	가조면 지산리 784	가조면 지산리 190	545	
	천동천	남하면 지산리 389	남하면 지산리 301	750	
	대사천	남하면 지산리 581	남하면 지산리 320-1	960	
	대천천	남하면 지산리 51	남하면 지산리 189-1	630	
	신촌천	남하면 둔마리 496	남하면 둔마리 795	1,218	
	원동천	신원면 수원리 500	신원면 수원리 836-1	600	
	양지1천	신원면 양지리 895-2	신원면 양지리 289-3	840	
	안봉천	신원면 양지리 1383	신원면 양지리 302-2	1,754	
	저전천	신원면 양지리 1099	신원면 양지리371-2	2,760	
	감약천	신원면 구사리 794	신원면 구사리625-1	1,127	
	월만천	신원면 구사리 1365	신원면 구사리 1055-5	1,750	
신기3천	신원면 구사리 산247	신원면 구사리553-1	2,044		



수계 (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지정 (변경·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낙동강	세안천	신원면 과정리 산165	신원면 과정리 693-3	752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해 변경함
	관동천	신원면 과정리 880-1	신원면 과정리376-2	1,140	
	대현천	신원면 대현리 1306	신원면 대현리 1165	1,518	
	외탐천	신원면 대현리 46	신원면 대현리 720	841	
	내탐천	신원면 대현리 9	신원면 대현리542-1	1,013	
	오례천	신원면 덕산리 995	신원면 덕산리827-3	573	
	쌍봉천	신원면 덕산리 1316-2	신원면 덕산리768-1	908	
	비곡천	신원면 와룡리 683	신원면 와룡리 1407-4	1,100	
	소야천	신원면 와룡리 1750-4	신원면 와룡리 1277	1,518	
	소야2천	신원면 와룡리 441	신원면 와룡리 975	800	
	상대천	신원면 대현리 산 133	신원면 대현리 1173-2	1,319	
	생초천	가조면 석강리 461	가조면 석강리 185-1	1,200	
	왕대천	가조면 석강리 산44-4	가조면 석강리 195-6	588	
	석강천	가조면 석강리 653	가조면 기리 559	1,869	
	양기천	가조면 기리 205-5	가조면 기리 813	1,964	
	음기천	가조면 기리 110-2	가조면 기리 801	1,064	
	광성천	가조면 기리 83	가조면 기리 933-1	857	
	학산천	가조면 기리 1442-2	가조면 기리 1158-2	969	
	안금1천	가조면 동례리 915	가조면 동례리 242	1,119	
	안금2천	가조면 동례리 681	가조면 동례리 284-1	908	
중평천	가조면 동례리 1001-1	가조면 동례리 467-1	775		
동례천	가조면 동례리 1492-4	가조면 동례리 401	743		

수계 (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지정 (변경·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낙동강	사양천	가조면 장거리 산283-3	가조면 장거리 1394-123	1,641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해 변경함
	역촌천	가조면 장거리 산95-3	가조면 장거리 235-3	475	
	모덕천	가조면 장거리 1243	가조면 장거리 1092-2	1,080	
	병산천	가조면 사병리1232	가조면 장거리707-1	1,032	
	당동천	가조면 사병리 49-2	가조면 사병리 1541-1	1,062	
	상마천	가조면 수월리산97-134	가조면 마상리 652-2	2,217	
	동동천	가조면 일부리 산43-9	가조면 도리 1515-1	913	
	대방골천	가조면 수월리 산55-21	가조면 수월리 386	799	
	용전천	가조면 수월리 1076	가조면 마상리 1057	1,364	
	부산천	가조면 수월리 290	가조면 일부리 1301	2,494	
	녹동천	가조면 일부리 327-4	가조면 일부리 998-2	1,557	
	도산당천	가조면 도리 1085-2	가조면 도리 1140-18	628	
	화곡1천	가조면 도리 1310	가조면 도리 1144-6	531	
	화곡2천	가조면 도리 1313	가조면 도리 1173	441	
	대학동천	가조면 도리299-2	가조면 도리 1608	720	
	양지2천	가조면 도리 288	가조면 도리 522-2	956	
	율리천	가조면 장거리 1307-1	가조면 장거리 1394-54	851	
	우혜큰땀천	가북면 우혜리 1569	가북면 우혜리 1840-2	870	
	우혜새터천	가북면 우혜리 1555	가북면 우혜리 1834	520	
	통사골천	가북면 우혜리 309	가북면 우혜리 1227	1,175	
공수천	가북면 박암리 91	가북면 박암리 1417	927		
옥산천	가북면 박암리 1206	가북면 박암리 1351	1,587		

수계 (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지정 (변경·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낙동강	호암천	가북면 박암리 1052-2	가북면 박암리 486	787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해 변경함
	윤오천	가북면 몽석리 1378	가북면 몽석리 1740-2	667	
	명동천	가북면 몽석리 719	가북면 몽석리 119-4	1,603	
	더무강천	가북면 용암리 1667	가북면 용암리 1800	802	
	개금천	가북면 용암리 294	가북면 용암리 428	796	
	상개금천	가북면 용암리 43	가북면 용암리 428	1,044	
	고비천	가북면 중촌리 761	가북면 중촌리 1776	2,466	
	회남천	가북면 해평리 1671	가북면 해평리 1465-1	1,490	
	연곡천	가북면 해평리 1276	가북면 해평리 854	696	
	정봉천	가북면 용산리 1054	가북면 용산리 344	2,036	

열람서류: 소하천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 5만분의 1 지형도)

비고: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 난에는 지번이나 연결되는 (소)하천명을 적는다.

○ 신설 3개소

수계 (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지정 (변경·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낙동강	신촌천	남하면 둔마리 496	남하면 둔마리 795	1,218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해 변경함
	소야2천	신원면 와룡리 441	신원면 와룡리 975	800	
	상대천	신원면 대현리 산 133	신원면 대현리 1173-2	1,319	

○ 폐지 9개소

수계 (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지정 (변경·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낙동강	구산천	거창읍 동변리 970-2	거창읍 동변리 산103-1	1,100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해 폐지함
	오산천	옹양면 한기리 428-1	옹양면 한기리 962	1,800	
	도계천	고제면 봉계리 869	고제면 봉계리 1142	800	
	내계천	북상면 월성리 612	북상면 월성리 993-1	3,450	
	호동천	위천면 남산리 736	위천면 남산리 254	1,600	
	강사천	신원면 덕산리 128	신원면 덕산리 386	1,750	
	은사천	가북면 우혜리 142	가북면 우혜리 1227	2,500	
	심방천	가북면 중촌리 산215	가북면 중촌리 942	1,100	
	두부실천	가북면 해평리 1189	가북면 해평리 1109-1	1,150	

##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폐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1일

거창군수 (인)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구역		
		지번 및 지목	면적(m <sup>2</sup> )	결정(변경·폐지)사유
낙동강	운정천	거창읍 송정리 136-16답 외 72필지	14,068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해 결정함
	새담천	거창읍 송정리 984전 외 27필지	4,671	
	덕곡천	거창읍 송정리 77-11답 외 34필지	6,850	
	중산앞천	거창읍 장팔리 340-1답 외 18필지	1,772	
	용곡천	거창읍 장팔리 1045답 외 22필지	8,592	
	사동뫼골천	거창읍 서변리 93전 외 21필지	6,286	
	뱀골천	거창읍 서변리 136-1답 외 37필지	4,975	
	죽동천	거창읍 동변리 386답 외 168필지	26,234	
	내학천	거창읍 학리 3 34답 외 22필지	13,468	
	법치골천	거창읍 학리 1 133-2답 외 35필지	14,952	
	구례천	거창읍 학리 7 774전 외 55필지	13,740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구역		
		지번 및 지목	면적(m <sup>2</sup> )	결정(변경·폐지)사유
낙동강	노혜천	거창읍 양평리 401-2답 외 41필지	21,302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해 결정함
	중촌천	거창읍 가지리 677-5답 외 70필지	19,241	
	지내천	거창읍 가지리 1056-2답 외 53필지	17,262	
	만추골천	거창읍 가지리 694장 외 59필지	20,627	
	도평천	주상면 도평리 181임 외 22필지	6,076	
	임실천	주상면 연교리 258답 외 66필지	25,021	
	사도동천	주상면 연교리 337답 외 27필지	8,996	
	독골천	주상면 완대리 27답 외 48필지	10,899	
	넘터천	주상면 완대리 704답 외 15필지	5,413	
	홍석동천	주상면 성기리 223답 외 6필지	4,763	
	성기천	주상면 성기리 4답 외 35필지	14,361	
	미기들천	주상면 성기리 471-3답 외 50필지	12,594	
	원거기1천	주상면 거기리 256과 외 45필지	14,837	
	내장포천	주상면 거기리 39전 외 67필지	35,599	
	덕동천	주상면 남산리 74답 외 48필지	10,012	
	한기천	웅양면 한기리 290답 외 119필지	27,857	
	장지천	웅양면 한기리 23답 외 114필지	27,586	
	왕암천	웅양면 신촌리 105답 외 111필지	28,824	
	왕암위천	웅양면 신촌리 462-5답 외 13필지	6,352	
	개화천	웅양면 신촌리 166-1답 외 126필지	36,250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구역		
		지번 및 지목	면적(m <sup>2</sup> )	결정(변경·폐지)사유
낙동강	하곡천	옹양면 한기리 149목 외 31필지	8,915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해 결정함
	송산천	옹양면 군암리 321답 외 38필지	8,196	
	군암천	옹양면 군암리 560전 외 30필지	4,740	
	금광천	옹양면 산포리 1045-3유 외 6필지	15,408	
	산포천	옹양면 산포리 1513대 외 22필지	4,531	
	노현천	옹양면 노현리 206대 외 97필지	16,357	
	화동천	옹양면 노현리 281-1답 외 48필지	17,987	
	죽림천	옹양면 죽림리 67-1답 외 125필지	21,044	
	유령천	옹양면 죽림리 216답 외 93필지	24,255	
	동호숲천	옹양면 동호리 41-2답 외 51필지	12,712	
	동호천	옹양면 동호리 10전 외 39필지	20,367	
	성북천	옹양면 동호리 200답 외 34필지	16,958	
	원농산천	고제면 농산리 376답 외 40필지	3,918	
	금계천	고제면 농산리 24답 외 27필지	8,437	
	진개울천	고제면 농산리 977-3답 외 25필지	9,267	
	손항천	고제면 농산리 1135임 외 48필지	30,653	
	패암천	고제면 개명리 91-1답 외 22필지	24,533	
	수류천	고제면 개명리 678답 외 23필지	2,706	
	상개명천	고제면 개명리 13-3유 외 35필지	20,762	
	하수내천	고제면 개명리 1246답 외 27필지	13,809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구역		
		지번 및 지목	면적(m <sup>2</sup> )	결정(변경·폐지)사유
낙동강	삼포천	고제면 개명리 1756답 외 19필지	9,086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해 결정함
	봉계천	고제면 봉계리 226답 외 28필지	4,483	
	중봉계천	고제면 봉계리 240전 외 25필지	3,664	
	원봉계천	고제면 봉계리 41-8답 외 56필지	8,784	
	와룡천	고제면 봉산리 434전 외 29필지	4,283	
	와룡2천	고제면 봉산리 673답 외 40필지	9,146	
	삼봉천	고제면 봉산리 481-3전 외 69필지	28,460	
	용초천	고제면 봉산리 607-5답 외 114필지	41,718	
	송지천	고제면 봉산리 234전 외 14필지	3,150	
	송지2천	고제면 봉산리 164전 외 23필지	6,797	
	학림천	고제면 공항리 906-11답 외 27필지	11,997	
	매학천	고제면 공항리 566대 외 35필지	5,058	
	공항천	고제면 공항리 46전 외 53필지	17,423	
	성골천	북상면 갈계리 1252답 외 16필지	4,787	
	목계천	북상면 갈계리 1170대 외 45필지	9,308	
	천곡천	북상면 갈계리 10답 외 32필지	9,769	
	중산천	북상면 갈계리 73-17답 외 52필지	20,198	
	신기1천	북상면 소정리 280-2전 외 16필지	8,649	
	청아천	북상면 소정리 637-3전 외 20필지	9,244	
	갈항천	북상면 소정리 47답 외 35필지	23,576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구역		
		지번 및 지목	면적(m <sup>2</sup> )	결정(변경·폐지)사유
낙동강	당산1천	북상면 소정리 874대 외 41필지	6,115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해 결정함
	월암천	북상면 소정리 1146-1답 외 20필지	15,983	
	강선대천	북상면 농산리 468답 외 18필지	4,823	
	병곡천	북상면 병곡리 768-6대 외 27필지	4,670	
	삼산천	북상면 산수리 311-3답 외 33필지	25,510	
	심동천	북상면 월성리 43-2답 외 19필지	24,578	
	양지상천	북상면 월성리 1254대 외 22필지	5,431	
	황점천	북상면 월성리 180-2답 외 8필지	18,210	
	가현천	위천면 남산리 247전 외 91필지	27,599	
	금능천	위천면 장팔리 511-1답 외 24필지	11,764	
	강남천	위천면 상천리 673-1답 외 43필지	23,725	
	덕거천	위천면 상천리 724-1답 외 14필지	6,557	
	면동천	위천면 강천리 243-2전 외 49필지	14,969	
	강천천	위천면 강천리 94-1답 외 125필지	39,090	
	뜸북천	위천면 황산리 320답 외 15필지	4,593	
	황산천	위천면 황산리 37답 외 58필지	22,311	
	당산2천	위천면 당산리 311답 외 34필지	15,153	
	당산세천	위천면 당신리 629답 외 42필지	19,751	
	모전천	위천면 모동리 272-2답 외 18필지	21,577	
	영승천	마리면 영승리 93전 외 26필지	10,616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구역		
		지번 및 지목	면적(m <sup>2</sup> )	결정(변경·폐지)사유
낙동강	풍계천	마리면 울리3 38답 외 27필지	16,498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해 결정함
	월화천	마리면 월계리 166답 외 53필지	26,437	
	학동천	마리면 월계리 413-2답 외 67필지	16,993	
	토점천	마리면 월계리 590답 외 37필지	14,997	
	말흘천	마리면 말흘리 372-1답 외 68필지	17,911	
	송림천	마리면 말흘리 777-1답 외 26필지	6,819	
	고대천	마리면 고향리 407답 외 31필지	14,354	
	상촌천	마리면 고향리 611답 외 87필지	47,267	
	고신천	마리면 고향리 1063-1답 외 21필지	10,124	
	엄대천	마리면 대동리 609-1답 외 71필지	24,872	
	고창천	마리면 하고리 81-1답 외 72필지	21,173	
	계동천	마리면 영승리 333답 외 12필지	10,168	
	내춘천	남상면 춘전리 51-1답 외 50필지	7,773	
	진목천	남상면 진목리 289-2답 외 48필지	10,817	
	남진천	남상면 둔동리 398-1전 외 28필지	8,868	
	가골천	남상면 둔동리 293-1답 외 51필지	14,320	
	외등천	남상면 오계리 735답 외 39필지	20,604	
	둔동천	남상면 둔동리 38-8답 외 30필지	6,047	
	지하천	남상면 무촌리 421답 외 66필지	22,183	
	각골천	남상면 대산리 584전 외 38필지	11,852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구역		
		지번 및 지목	면적(m <sup>2</sup> )	결정(변경·폐지)사유
낙동강	청림천	남상면 대산리 1414-1답 외 17필지	9,196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해 결정함
	한산천	남상면 대산리 332-3전 외 58필지	17,602	
	월평천	남상면 월평리 180-3답 외 125필지	39,372	
	평촌천	남상면 대산리 1606공 외 21필지	15,209	
	월포천	남상면 임불리 120답 외 42필지	14,754	
	정골천	남하면 둔마리 196답 외 36필지	15,774	
	대촌천	남하면 둔마리 358답 외 33필지	16,834	
	안흥천	남하면 둔마리 1274-2답 외 29필지	8,118	
	아주천	남하면 양항리 39답 외 10필지	5,638	
	대곡소천	남하면 양항리 449답 외 41필지	5,178	
	심지천	남하면 무릉리 811전 외 12필지	5,147	
	양곡천	남하면 무릉리 796-1답 외 36필지	3,880	
	무릉천	남하면 무릉리 1095-1대 외 24필지	3,468	
	무릉2천	남하면 무릉리 1254답 외 25필지	5,055	
	월곡천	남하면 무릉리 177답 외 121필지	38,919	
	대야천	남하면 대야리 1023-1임 외 69필지	26,601	
	자하천	남하면 지산리 1301답 외 25필지	10,185	
	신기2천	남하면 지산리 1054-4답 외 83필지	26,611	
	장전천	남하면 지산리 721답 외 25필지	3,147	
	천동천	남하면 지산리 367대 외 14필지	8,983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구역		
		지번 및 지목	면적(m <sup>2</sup> )	결정(변경·폐지)사유
낙동강	대사천	남하면 지산리 215-1답 외 25필지	9,464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해 결정함
	대천천	남하면 지산리 87답 외 31필지	6,018	
	신촌천	남하면 둔마리 533답 외 31필지	14,083	
	원동천	신원면 수원리 470답 외 29필지	7,571	
	양지1천	신원면 양지리 719-2도 외 33필지	5,679	
	안봉천	신원면 양지리 232-1임 외 53필지	29,235	
	저전천	신원면 양지리 101-9답 외 98필지	43,190	
	감약천	신원면 구사리 625-1천 외 39필지	8,430	
	원만천	신원면 구사리 1055-3천 외 42필지	45,459	
	신기3천	신원면 구사리 53-4임 외 77필지	30,820	
	세안천	신원면 과정리 609-3도 외 48필지	5,859	
	관동천	신원면 과정리 368-13답 외 68필지	7,414	
	대현천	신원면 대현리 1140임 외 45필지	19,076	
	외탐천	신원면 대현리 112-6천 외 35필지	9,558	
	내탐천	신원면 대현리 10답 외 32필지	17,780	
	오례천	신원면 덕산리 783전 외 34필지	4,912	
	쌍봉천	신원면 덕산리 724-1답 외 40필지	12,313	
	비곡천	신원면 와룡리 682-1임 외 72필지	17,098	
	소야천	신원면 와룡리 206답 외 77필지	16,370	
	소야2천	신원면 와룡리 357답 외 32필지	7,801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구역		
		지번 및 지목	면적(m <sup>2</sup> )	결정(변경·폐지)사유
낙동강	상대천	신원면 대현리 1062-1임 외 37필지	17,787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해 결정함
	생초천	가조면 석강리 32답 외 75필지	19,176	
	왕대천	가조면 석강리 252-1답 외 40필지	8,230	
	석강천	가조면 대초리 408구 외 56필지	27,665	
	양기천	가조면 기리 146-1천 외 84필지	27,193	
	음기천	가조면 기리 110답 외 94필지	12,418	
	광성천	가조면 기리 34-6답 외 23필지	11,421	
	학산천	가조면 기리 1158-2도 외 36필지	8,648	
	안금1천	가조면 동례리 243-1전 외 23필지	14,186	
	안금2천	가조면 동례리 250답 외 28필지	12,133	
	중평천	가조면 동례리 415-2대 외 25필지	7,543	
	동례천	가조면 동례리 393-1구 외 23필지	8,676	
	사양천	가조면 장기리 1170-3구 외 25필지	23,413	
	역촌천	가조면 장기리 235-3천 외 15필지	4,814	
	모덕천	가조면 장기리 1015답 외 13필지	16,063	
	병산천	가조면 사병리 1164대 외 43필지	13,040	
	당동천	가조면 사병리 63천 외 49필지	11,203	
	상마천	가조면 마상리 376-1답 외 194필지	27,791	
	등동천	가조면 일부리 37답 외 29필지	9,506	
	대방골천	가조면 수월리 316전 외 18필지	9,350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구역		
		지번 및 지목	면적(m <sup>2</sup> )	결정(변경·폐지)사유
낙동강	용전천	가조면 마상리 536-2도 외 59필지	18,169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해 결정함
	부산천	가조면 일부리 520답 외 115필지	30,283	
	녹동천	가조면 일부리 271-2구 외 56필지	19,018	
	도산당천	가조면 도리 969답 외 22필지	12,087	
	화곡1천	가조면 도리 878-1구 외 20필지	9,230	
	화곡2천	가조면 도리 1168답 외 11필지	5,576	
	대학동천	가조면 도리 299-2임 외 43필지	9,324	
	양지2천	가조면 도리 219-7전 외 43필지	10,775	
	율리천	가조면 장기리 903-3답 외 47필지	14,147	
	우혜큰맷천	가북면 우혜리 1567전 외 37필지	5,015	
	우혜새터천	가북면 우혜리 1544전 외 28필지	3,755	
	통사골천	가북면 우혜리 389답 외 28필지	27,732	
	공수천	가북면 박암리 2임외 32필지	7,446	
	옥산천	가북면 박암리 387-4답 외 78필지	15,369	
	호암천	가북면 박암리 397-5답 외 51필지	10,031	
	윤오천	가북면 몽석리 1374답 외 21필지	8,420	
	명동천	가북면 몽석리 118대 외 69필지	29,923	
	더무강천	가북면 용암리 1661전 외 25필지	17,339	
	개금천	가북면 용암리 293답 외 24필지	12,997	
	상개금천	가북면 용암리 38전 외 50필지	15,825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구역		
		지번 및 지목	면적(m <sup>2</sup> )	결정(변경·폐지)사유
낙동강	고비천	가북면 중촌리 758-2답 외 84필지	42,488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해 결정함
	회남천	가북면 해평리 1466-7답 외 81필지	13,056	
	연곡천	가북면 해평리 832-3도 외 42필지	5,963	
	정봉천	가북면 용산리 345-5답 외 73필지	26,550	

첨부서류: 1. 소하천구역으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2.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

거창군 고시 제 2022-9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거창군수 (인)

정비 기간	2022년 01월 ~ 2032년 01월		
대상 소하천	총 195개소(주요 소하천:운정천, 새담천, 덕곡천, 중산앞천, 옹곡천 등)		
총 사업비	625,874,370 천원	총길이	226.820km
목적 및 정비 효과	재해예방	<input type="checkbox"/> 홍수시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한 통수단면 확보 <input type="checkbox"/> 기존 하천시설물 개·보축 방안 수립	
	생활환경 개선	<input type="checkbox"/> 양호한 상태의 수질 및 식생을 보전하는 하천 환경 개선 방안수립 <input type="checkbox"/> 하천 생태계 유지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한 정비계획수립	

열람서류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서
2. 소하천 종합도(축척 5만분의 1지형도)



##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궤도,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업 추진에 따른 거창군계획 시설(교통시설:궤도,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2. 1. 27.

###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산19-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궤도, 주차장)사업
- 명 칭 : 궤 도 -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주차장 - 거함산 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3. 사업의 개요

1) 교통시설:궤도

종류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 행 규 모(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군 계획시설	교통시설	궤도 (상,하부 정류장)	고제면 개명리 산19-31번지	27,870.0	13,953.0	684.12	737.37	거창군 고시 제2017-105호 (2017.8.24.)	

## 2) 교통시설:주차장

종류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 행 규 모(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군 계획시설	교통시설	주차장	고제면 개명리 산19-14번지	7,939.0	7,939.0	거창군 고시 제2017-105호 (2017.8.24.)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산림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2018.10.25. ~ 2021.12.31.
- 변경 : 2018.10.25. ~ 2022.12.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 7.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궤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8필지	-	-	47,376	13,953					
1	고제면 개명리	2051-13	주	7,964	3,475		거창군			
2	고제면 개명리	2051-14	잡	1,944	492		거창군			
3	고제면 개명리	산22-29	임	13,822	486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	강**	근저당권 지상권	거창군산림조합	
4	고제면 개명리	산19-12	임	4,110	28		거창군			
5	고제면 개명리	산19-31	임	4,559	4,531		거창군			
6	고제면 개명리	산19-14	도	13,316	3,280		거창군			
7	고제면 개명리	2036-6	잡	1,551	1,551		거창군			
8	고제면 개명리	2036-5	잡	110	110		거창군			

○ 주차장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12필지	-	-	19,302	7,939					
1	고제면 개명리	2036	차	326	326		거창군			
2	고제면 개명리	2036-2	도	349	349		국토교통부			
3	고제면 개명리	산19-20	임	2,461	2,461		거창군			
4	고제면 개명리	2036-1	전	535	535		거창군			
5	고제면 개명리	산19-23	임	120	120		거창군			
6	고제면 개명리	산19-27	임	72	72		거창군			
7	고제면 개명리	산19-28	임	28	28		거창군			
8	고제면 개명리	산19-14	도	13,316	1,953		국토교통부			
9	고제면 개명리	2036-4	차	1,226	1,226		거창군			
10	고제면 개명리	2036-3	차	370	370		거창군			
11	고제면 개명리	2037-3	전	79	79		거창군			
12	고제면 개명리	산19-29	임	420	420		거창군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26.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상임실길 103 등 7건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국농소2길 38-9 등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302-2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상임실길 103	20220126	20090401	300여년 전에 경주 김씨가 마을을 이루었다하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76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화3길 75	20220126	20091228	침의 꽃이 핀다고 하여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361-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밤티재로 675-1	20220126	20091228	밤티재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535-35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계수나무길 301-17	20220126	20090401	달속의 계수나무 모양이라 이름지어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29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962-175	20220126	20091228	송계사를 지나 고제면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건물번호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326-5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661	20220126	20091228	가북면 용암리를 지나 해인사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건물번호 부여	
7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완대리 157-1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1271-85	20220126	20091228	주상면의 옛지명이 반영 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국농소2길 38-9	20220126	20090401	임진왜란 때 대사헌 위가 전사하고 그 후손이 나라에서 낙향해 귀농하였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건물번호 폐지	
9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2107-62	20220126	20091228	고제면에 위치한 빼재라는 지명을 반영한 도로	건물번호 폐지	
10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2107-50	20220126	20091228	고제면에 위치한 빼재라는 지명을 반영한 도로	건물번호 폐지	
1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2107-46	20220126	20091228	고제면에 위치한 빼재라는 지명을 반영한 도로	건물번호 폐지	

●거창군 공고 제2022 - 145호

군도16호선 도로 선형개량공사

군도의 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예정인 『군도16호선 도로 선형개량공사』에 대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1일

거 창 군 수

1.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로선형개량공사
- 나. 명 칭 : 군도16호선 도로 선형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예정지 : 경남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산295-1번지 일원

4. 사업의 규모 : 도로 확·포장 L=543.0m, B=7.0m~10.2m

5.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기존군도가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급하여 이용자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어 도로 선형개량 시행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별도첨부

7.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 055-940-3557, FAX 055-940-3529
- 다. 이의신청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055-940-355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 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 명	권리자	
합계		-	-	66,783	4,025					
1	남상면 무촌리	산291-2	임	318	250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367-3 현대아파트 103-304호	진*태			
2	“	산290-3	임	3,009	119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44 미리샘마을 202-1003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803 청구아파트 101-908	이*정 김*연			
3	“	산290-2	임	6,780	510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44 미리샘마을 202-1003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803 청구아파트 101-908	이*정 김*연			
4	“	산290	임	52,277	261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44 미리샘마을 202-1003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803 청구아파트 101-908	이*정 김*연			
5	“	산305-9	임	3,495	2,494	부산 서구 대신동 2가 220	신 흥			
6	“	산305-12	임	239	37	부산 서구 대신동 2가 220	신 흥			
7	“	산305-13	임	21	21	부산 서구 대신동 2가 220	신 흥			
8	“	산306-3	임	147	147	남상면 무촌리 40-1	대한불교 조계종			
9	“	산306	임	246	145	남상면 연수사길 115-103	대한불교 조계종연수사			
10	“	산305-11	임	251	41	부산 서구 대신동 2가 220	신 흥			
		이		하		여	백			

●거창군 공고 제2022 - 161호

웅양 우랑(305호선) 농어촌도로 교량 재가설공사

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웅양 우랑(305호선) 농어촌 도로 교량 재가설공사』에 대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5일

거 창 군 수

1.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농어촌도로 교량 재가설공사
- 나. 명 칭 : 웅양 우랑(305호선) 농어촌도로 교량 재가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예정지 : 경남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일원

4. 사업의 규모 : 교량설치 L=14.5m, 평균 폭 B=8.0m

5. 사업의 목적 : 본 교량은 폭이 협소하고 누후되어 주민 통행에 불편이 많아 본 사업으로 교량을 재가설하여 교통소통 원활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함.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별도첨부

7.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2022. 1. 25. ~ 2022. 2. 11.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 055-940-3557, FAX 055-940-3529
- 다. 이의신청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055-940-355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2 - 162호

남상 고척마을(면도1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남상면 전척리 고척마을 지내에 시행예정인 『남상 고척마을(면도1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5일

거 창 군 수

1.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로 확포장공사
- 나. 명 칭 : 남상 고척마을(면도1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예정지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고척마을 지내

4. 사업의 규모 : 도로 확·포장 L=1,428.4m, B=8.0m

5. 사업의 목적 : 남상면 전척리 일원 미정비된 고척마을 진입로를 정비하여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함.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별도첨부

7.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 055-940-3557, FAX 055-940-3529
- 다. 이의신청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055-940-355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면 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 명	권리자	
합계		-	-	11,084	5,836					
소계		-	-	6,342	3,732					
1	남상면 전척리	572-4	답	74	74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417	이*수			
2	“	582	답	1,626	9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226	정*원 외1인			
3	“	575	목	1,193	215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65 라일락타운 시동 101호	이*도			
4	“	산128-3	임	356	356	미합중국 뉴욕 11361 베이사이드 200-23 45 아베 2층	김*호 외1인			
5	“	산128-1	임	468	468	미합중국 뉴욕 11361 베이사이드 200-23 45 아베 2층	김*호 외1인			
6	“	산128-4	임	25	25	미합중국 뉴욕 11361 베이사이드 200-23 45 아베 2층	김*호 외1인			
7	“	산123-1	임	330	330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49-1	강*욱			
8	“	산123-8	임	67	67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49-1	강*욱			
9	“	산123-9	임	10	10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49-1	강*욱			
10	“	575-5	답	47	47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길 48, 102동 603호	허*균			
11	“	산123-10	임	83	83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49-1	강*욱			
12	“	산123-5	임	132	132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49-1	강*욱			
13	“	산123-6	임	3	3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49-1	강*욱			
14	“	산123-7	임	291	291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49-1	강*욱			
15	“	산123-3	임	513	513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49-1	강*욱			
16	“	669-2	답	29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길 48, 102동 603호	허*균			
17	“	산122-6	임	694	694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95-19 수정주택 지-1	박*규			
18	“	647-2	답	234	23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21-2 영광그리파크 나동 307호	엄*수			
19	“	산113-4	임	91	91	거창군 남상면 고척길 386-45	이*균			
20	“	산113-5	임	25	25	거창군 남상면 고척길 386-45	이*균			
21	“	산113-3	임	16	14	거창군 남상면 고척길 386-45	이*균			
22	“	653-2	답	35	22	거창군 남상면 고척길 443-9	이*성 외1인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지적면 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 명	권리자	
소계		-	-	4,543	1,905					
23	남상면 전척리	624-19	답	34	34	거창군 남상면 고척길 443-9	이*성 외1인			
24	“	624-20	답	160	160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756	이*선			
25	“	624-12	답	61	61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756	이*선			
26	“	654	답	46	46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756	이*선			
27	“	619-2	전	28	28		염*전 외7인			
28	“	619-1	전	28	20		염*전 외7인			
29	“	628-1	답	4	4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903-59	이*인			
30	“	772-1	전	198	196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756	이*선			
31	“	772-2	전	518	518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756	이*선			
32	“	776-1	도	51	22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60	합천이씨귀업 공파종중			
33	“	776	임	2,689	122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60	합천이씨귀업 공파종중			
34	“	790-1	도	34	34		손*옥			
35	“	790-2	전	82	82		손*옥			
36	“	789-1	도	3	3		허*룡			
37	“	789	임	66	38		허*룡			
38	“	788-1	도	20	20		허*룡			
39	“	786-3	전	33	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55 벽산아파트 107-907	염*식			
40	“	786-1	도	2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55 벽산아파트 107-907	염*식			
41	“	785-1	도	8	4		허*암			
42	“	794-5	도	244	244		이*하 외3인			
43	“	794-3	임	54	54		이*하 외3인			
44	“	795-2	임	180	180		이*하 외3인			



< 국유재산 용도폐지 검토를 위한 >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거창군 공고 제2022-163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40조 직권 용도폐지 검토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4조 3항 같은법 시행령 32조의3에 의거,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주민 등은 의견이 있을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6일

### 거창군수

#### 1. 용도폐지 검토대상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폐지 신청면적	비고
거창군 김천리 449-14	구거	70㎡	70㎡	위치도 등 붙임 참고

#### 2.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	열람기간
거창군청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2022. 1. 26. ~ 2022. 2. 9.

####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2. 1. 26. ~ 2022. 2. 9.

○ 제출방법 : 의견제출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055-940-3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의견제출서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8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제77조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안내문, 부과지서, 자동차 검사명령서,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건설기계검사지시 최고 통지,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검사유효기간 경과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1항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건설기계 검사안내 및 위반자 우편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22. 1. 27. ~ 2022. 2. 15.
3. 공고대상 : 67건(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3)

2022년 1월 27일

## 거 창 군 수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시행규칙」
2. 일부개정 및 제정 이유 : 청년 정책 추진과 청년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 가. 청년 생활 안정 지원사업을 신설함 (안 제 16조의2)
      - 1) 결혼 축하금
      - 2) 금융지원
      - 3)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나. 중복 지원 제한을 정함(안 제16조의 3)
  -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시행규칙」

청년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지원 규모 및 기준을 정함(안 제2조, 별표)

가. 규모

- 1) 청년 결혼축하금 : 최대 600만원
- 2) 청년 디딤돌통장 : 최대 480만원
- 3)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최대 150만원

나. 기준

1) 청년 결혼축하금

- 가) 부부 모두 청년일 것
- 나) 혼인신고 시 부부 중 1명 이상이 거창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다)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라) 3회 신청 시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 마) 생애 한 번만 지원

2) 청년 디딤돌통장

- 가)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거창군에 주소를 둔 청년일 것
- 나)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노동자일 것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청년
    - 피고용주 또는 고용주(소상공인)
    - 농·축·임업 종사자\* 인정 \*증명서 발급 가능한 청년
- 다)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30퍼센트 이하일 것
- 라) 지급 시 군 주소 유지할 것

3)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4. 소요예산 : 2022년 470백만원 확보

5. 예고기간 : 2022. 1. 26. ~ 2. 15. (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인구교육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인구교육과)
- 전화 : 055-940-8818, 팩스 : 055-940-8709, 이메일: gcssj@korea.kr

- 붙임 1.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및 시행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생활안정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 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 노동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일정 기간 후 약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중복 지원 제한)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지원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결혼한 사람 또는 노동자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이자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이자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거창에서 살아보기 지원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16조의2(생활안정 지원사업) ①</u>  <u>군수는 청년 부부에게 결혼축하</u>  <u>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u>  <u>있다.</u></p> <p><u>② 군수는 청년 노동자에게 매월 일</u>  <u>정 금액을 지원하여 일정 기간 후</u>  <u>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u>  <u>하는 금융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u>  <u>원할 수 있다.</u></p> <p><u>③ 군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u>  <u>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청년에게 예</u>  <u>산의 범위에서 그 주택 전세자금의</u>  <u>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u></p> <p><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u>  <u>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u>  <u>정한다.</u></p>
<p><u>&lt;신 설&gt;</u></p>	<p><u>제16조의3(중복 지원 제한) 제16조</u>  <u>의2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u>  <u>지원을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u>  <u>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u>  <u>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u>  <u>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u>  <u>우에는 해당 지원을 제외한 나머</u>  <u>지 부분만 지원한다.</u></p>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 「청년기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97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6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적정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 생활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에 관한 사항
4. 기업유치,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등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동체 자립기반 조성 등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주민의 자율적인 교육 및 훈련 지원, 마을·공동체 전문가 양성 등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행정기관 기능 조정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1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사업별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해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원결정 및 통보)** ① 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7일까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원 결정 및 통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그 밖의 지원분야의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이자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표] 청년 생활안정 지원기준(제2조 관련)

사 업 명	세 부 지원 기준												
청년 결혼 축하금	<p>가. 지원요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부 모두 청년일 것</li> <li>2) 혼인신고 시 부부 중 1명 이상이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li> <li>3)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1회 신청 이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소를 유지해야 2~3회 신청 시 지원</li> <li>4) 3회 신청 시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li> <li>5) 생애 한 번만 지원</li> </ol> <p>나. 신청시기 및 지급금액 (단위: 천원)</p> <table border="1" data-bbox="399 952 1417 1137"> <thead> <tr> <th>구 분</th> <th>최초</th> <th>2회</th> <th>3회</th> </tr> </thead> <tbody> <tr> <td>신청시기</td> <td>혼인신고 후 1년 이내</td> <td>최초 신청 다음 연도</td> <td>2회 신청 다음 연도</td> </tr> <tr> <td>지급금액</td> <td>2,000</td> <td>2,000</td> <td>2,000</td> </tr> </tbody> </table> <p>다. 지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읍·면: 혼인 신고시 결혼 축하금 시책 안내 및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7일까지 인구교육과 송부</li> <li>2) 인구교육과: 신청서 취합 확인 후 다음 달 지급</li> </ol>	구 분	최초	2회	3회	신청시기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최초 신청 다음 연도	2회 신청 다음 연도	지급금액	2,000	2,000	2,000
구 분	최초	2회	3회										
신청시기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최초 신청 다음 연도	2회 신청 다음 연도										
지급금액	2,000	2,000	2,000										
청년 디딤돌통장	<p>가. 지원요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거창군에 주소를 둔 청년일 것</li> <li>2)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노동자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청년</li> <li>·피고용주 또는 고용주(소상공인)</li> <li>·농·축·임업 종사자* 인정 *증명서 발급 가능한 청년</li> </ul> </li> <li>3)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30퍼센트 이하일 것</li> <li>4) 지급 시 군 주소 유지할 것</li> </ol> <p>나. 지원 방법 및 금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애 한 번만, 최대 4,800천원 지원</li> <li>2) 매월 적립 후 2년 만기 시 지급</li> </ol> <p>다. 지원 대상 선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선정인원: 매년 100명</li> </ol>												

사 업 명	세 부 지원 기준
	<p>- 우선순위 : 가구 소득인정액 낮은 신청자 순</p> <p>3) 동점자 순위 결정: 가구 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 다음의 우선 순위 기준 적용</p> <p>(가) 가구원 수 많은 사람</p> <p>(나) 신청자의 연령이 적은 사람</p> <p>라. 지원 제외 대상</p> <p>1)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p> <p>2)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년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p> <p>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직</p> <p>4) 군 복무자 및 군 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지요원 등), 선정된 후 군 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p> <p>5)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p> <p>6) 그 밖에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업종 종사자 및 운영자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p>
<p>3.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p>	<p>가. 지원요건: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으로서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자로 다음의 대상별 조건을 충족하는 군민</p> <p>1)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p> <p>2) 출산가정: 자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가정</p> <p>3) 전입세대: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전입세대</p> <p>나. 지원금액</p> <p>1) 지원 금액: 주택 전세 자금의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지급하되, 대출기간 남은 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 다만, 다음의 지원 내용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지원</p> <p>(가)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p> <p>(나) 출산가정: 최대 150만원</p> <p>(다) 전입세대: 최대 50만원</p> <p>2) 지원기간: 연 한 번, 최대 세 번 지원</p>



# 거창군 청년 디딤돌 통장 가입신청서

접수번호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표 하세요.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니, 아래 칸에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공란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 기본정보			
<b>인적 사항</b>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최종 학력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졸업 <input type="checkbox"/> 대학교(재학,휴학) <input type="checkbox"/> 대학교졸업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이상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결혼 여부	<input type="checkbox"/> 미혼 <input type="checkbox"/> 기혼	
	거창군 거주기간	<input type="checkbox"/>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 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 거창군 최종 전입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기간	
<b>가구 및 소득</b>	가구 특성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가구 <input type="checkbox"/>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 <input type="checkbox"/> 그 외 일반 가구	
	가구원 수 (신청자 포함)	<input type="checkbox"/> 1인 <input type="checkbox"/> 2인 <input type="checkbox"/> 3인 <input type="checkbox"/> 4인 <input type="checkbox"/> 5인 <input type="checkbox"/> 6인 이상 (가구원 수:    ) ※ (미혼-본인 및 부모(주민등록등본상), 기혼-본인 및 배우자, 자녀포함)	
<b>근로 사항</b>	근로유형	<input type="checkbox"/> 임금 노동자(상용직, 임시직) <input type="checkbox"/> 일용직 <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자 <input type="checkbox"/> 농어업소득자 <input type="checkbox"/> 축산업소득자 <input type="checkbox"/> 임업소득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공고일 기준 최근 60일)	
	근무처 (사업장)명		근무처 연락처
	근무처 주소		
<b>자산 수준</b>	주거현황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무상거주 <input type="checkbox"/> 1억원이상 전월세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전월세 <input type="checkbox"/> 2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전월세 <input type="checkbox"/> 2천만원 미만 전월세	
	자동차 (본인)	<input type="checkbox"/> 2,000cc 이상 <input type="checkbox"/> 1,600cc이상 ~ 2,000cc미만 <input type="checkbox"/> 1,000cc이상 ~ 1,600cc미만 <input type="checkbox"/> 1,000cc미만 경차 <input type="checkbox"/> 차량 없음 ※ 본인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모두 표시	
	자동차 (가구원)	<input type="checkbox"/> 2,000cc 이상 <input type="checkbox"/> 1,600cc이상 ~ 2,000cc미만 <input type="checkbox"/> 1,000cc이상 ~ 1,600cc미만 <input type="checkbox"/> 1,000cc미만 경차 <input type="checkbox"/> 차량 없음	
	부채상황	<input type="checkbox"/> 신청자 대출금(                    만원, 내역:            ) <input type="checkbox"/> 없음	

Ⅱ. 입금 받을 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Ⅲ. 적립금 마련 사용계획 등		
신청동기	거창군 디딤돌 통장사업에 신청하게 된 동기에 대해 작성해주세요.	
적립금 마련계획	※ 매달 납입할 적립금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작성해주세요.	
적립금 사용계획	다음 중 복수 항목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구직활동비 <input type="checkbox"/> 창업자금 <input type="checkbox"/> 결혼자금 <input type="checkbox"/> 주거비 <input type="checkbox"/> 학자금대출 상환 <input type="checkbox"/> 기타( )	
<b>신청인 제출서류</b>		
1. 가입 신청서 1부. <span style="float: right;">2. 개인정보 동의서 1부.</span> 3. 통장사본 1부. <span style="float: right;">4.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1부.</span> 5. 소득재산신고서 1부 <span style="float: right;">6. 고용·임금확인서 1부</span> 7. 사용대차확인서 1부.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위의 내용 및 별지 사업 공고문과 신청 안내문을 확인하였고 해당내용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거창군 청년 디딤돌통장」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 및 가족의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4. 신청조사와 별도로 가입기간 중 실시하는 확인조사를 통해 기준 부적합 시 중도해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거창군 청년 디딤돌 통장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읍면(접수)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서명란'은 신청자가 기재하지 않으니, 비워두시면 됩니다.

거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정 보 주 체	성 명		연 락 처	
	생년월일		주 소	

거창군이 시행하는 “청년 디딤돌 통장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거창군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법령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귀하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거창군 「청년 디딤돌 통장」 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및 참여자와의 원활한 상담,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통장사업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필요 시 거창군과 통장사업 진행과 관련한 금융기관 또는 협력업체에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결혼여부, 거주기간, 가구 특성, 가구원 수, 근로유형, 근무처명, 근무처 주소, 근무처 주소, 주거현황, 자동차 소유현황, 부채 현황, 계좌번호, 신청동기, 적립금 마련계획 및 사용계획 등
- 그 밖의 사항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거창군 「청년 디딤돌 통장」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귀하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거창군 「청년 디딤돌 통장」 참여가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거창군 청년 디딤돌통장」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 일용근로 사실 확인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실 확인 내용  
(일용근로 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간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지급금액	원	원	원	원	원
사업장명					

사실 확인 내용

1. 상기 본인은 과거에 상기와 같이 일용근로를 한 바 있음을 신고합니다.
2.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소득·재산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중도해지 및 본인적립금 외 군 장려금 미지급)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거창군수 귀하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 임금이체 통장사본 별첨 제출

## 거창군 청년 디딤돌 통장 가입전 자가진단표

거창 디딤돌 통장은 참가자가 2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신청서 작성 전 아래 내용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가입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연 번	점검내용	선택 체크
1	귀하는 해당 연도 기준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에 해당합니까? ※ 1977. 1. 1. ~ 2003. 12. 31.까지 출생.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귀하는 공고일 기준 거창군 거주자입니까? ※ 주민등록등본기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귀하는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상기 근로내역에 대하여 공고문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거창군이 공고한 방식으로 조사한 귀하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3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됨에 동의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본 사업의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입자로 선정되더라도 거창군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거창 디딤돌 통장 이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되나, 이로 인해 참여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	가입자로 선정된 경우, 공고내용과 같이 만기해지, 중도해지, 특별중도 해지 사유에 따라 자립지원금 지급여부 및 이자를 차등 적용해 적립금으로 지급하는데 동의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 금융정보조회, 서류심사 등을 통해 10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사업의 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소득·재산 증빙자료 요구시 기한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미제출로 인한 피해는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동의 하십니까?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와 같이 확인 동의 합니다.

20 . . .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 소					주택 :
거창군 거주기간						
신청구분 내용기재	혼인신고일 <small>(신혼부부 해당)</small>				주택소유여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	<input type="checkbox"/> 무주택
	출산일 <small>(출산가정 해당)</small>					
	전입신고일 <small>(전입세대 해당)</small>					
임차 주택현황	소재지				소유자	
	임차 금액(원)				임차면적 (제곱미터)	
대출현황	대출기관	대출금액(원)		대출잔액(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청금액	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p style="text-align: center;">「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p>						
위와 같이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b>거창군수 귀하</b>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정보 확인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신청인: 성명, 주소(전입일자 포함), 자녀 수 나. 신청인: 혼인신고일,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지방세 내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1년 신청인은 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창군이 청년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칸에 √ 표시)</p> <p><b>*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b></p>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전세자금인 경우)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 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1부 5. 신청인의 통장				1. 신분증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2. 혼인관계증명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요청 (부부 각 1부)		
읍·면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일			읍·면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직인</span>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

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 「청년기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97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6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적정공급기준에 관



한 사항

2. 지역 간 생활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에 관한 사항
4. 기업유치,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등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동체 자립기반 조성 등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주민의 자율적인 교육 및 훈련 지원, 마을·공동체 전문가 양성 등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행정기관 기능 조정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1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붙임 2]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서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에서 추진중인 『서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 계획(안)과 관련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거창군수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서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목적 : 노후화 농업기반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전영농을 확보하기 위함
-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 수혜면적 : 158.50ha
- 편입면적 : 16,865.0㎡
- 사업규모 : 여수토방수로 재설치 L=176.0m, 그라우팅 234공, 취입보 1식
- 사업비 : 4,812백만원(국비)

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35)

3. 사업기간 : 2022년 02월 ~ 2024년 12월

4. 열람내용 : 서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사업인정신청 및 관계 서류  
※ 관계도서 : 게재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 5. 열람기간 및 방법

- 기간 : 2022년 01월 27일 ~ 2022년 02월 10일(15일간)  
▶ 열람기간 산정 : 열람 초일인 26일 다음날 27일 부터 15일간 적용
-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농어촌사업부(☎055-940-5500)  
거창군 건설과 농업기반담당(☎055-940-3540)  
위천면 행정복지센터(☎055-940-7560)
- 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거창군 농업기반담당, 위천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자료 열람  
▶ 설명 : 열람방법은 필히 공사 및 시군 담당부서에 열람 조치

### 6.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 및 기타사항

- 제출기간 : 열람 기간내
- 제출장소 : 열람 장소 및 군 홈페이지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구 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1	위천	상천	산46	2	임	36,030	13,267	백○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수용
2	위천	상천	산29	2	임	1,983	1,983	김○동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
3	위천	상천	산30	2	임	3,591	72	청주○씨영모종중	-	〃
4	위천	상천	산30	9	임	44,847	473	청주○씨영모종중	-	〃
5	위천	상천	산30	1	임	8,642	1,070	청주○씨영모종중	-	〃
6	위천	상천	1307	6	구	6,447	334	국(농림수산부)	-	〃
7	위천	상천	산64	-	구	27	27	국(농림수산부)	-	〃
8	위천	상천	산65	-	구	51,501	942	국(농림수산부)	-	〃
9	위천	상천	산30	8	구	880	80	한국농어촌공사	-	〃
10	위천	상천	1338	-	구	3,907	115	국(농림수산부)	-	〃

□ 의견제출서

<b>의견제출서</b>		
사업의 종류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사업의 명칭	서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사업의 위치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제출인	주소	
	성명	

●거창군 경제 제2022-1호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 공고문

농어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조성된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하여 마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을 자립운영 정착을 유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관리자 채용을 공고합니다.

- 모집인원 : 1명
- 공고기간 : 2022. 1. 25. ~ 2022. 2. 2.(수) 18:00까지
- 접수기간 : 2022. 2. 3.(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공동체담당 방문 및 우편신청, 이메일 신청 (문의: 940-3353, ggirimi@korea.kr)
- 참여자격
  - 채용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
  - 주요 담당업무 및 채용 희망 마을의 운영계획서상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함
    - ※ 다만, 지원 대상마을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영농은 겸직 가능
  - 지원 대상마을 대표(이장, 운영위원장)의 직계존비속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되며, 마을 대표와 프로그램관리자 겸임 불가

### < 프로그램관리자 채용 우대요건 >

- ❖ 가점 최대 5점 부여
- ❖ 취업취약계층 관련서류 제출자(최대 3점)
  - ※ 취업취약계층 : ①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청년은 졸업일 기준) ②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 차상위계층) ③고령자 ④장애인 ⑤여성가장 ⑥결혼이민자 ⑦북한이탈주민
- ❖ 유사형태 마을 사무장 경력 유무,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 자격증 보유 여부(최대 2점)



-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면접 응시 안내
  - \* 접수결과 응모자가 없을 시 재공고
  - \* 단, 1명 응모 시 재공모 없이 평가함
  
- 근무시간 : 주 40시간 이내
- 근무처 : 거창읍 모곡2길 서면정보화마을 정보센터
- 근무기간 : 협약일 ~ 2022. 12. 31. (계약만료 후 재계약 가능)
- 신청서류
  1. 채용 신청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1통 (필수)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6. 자격증 사본 각 1부 (자격증 보유자)
  7. 경력증명서 각 1부 (경력 보유자, 경력별 각 1부)
  8.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붙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 신청서 양식 1부. 끝.



※ 작성요령

① 최종학력(전공)

- 졸업년도 및 전공 등을 기재하되, 고등학교 및 전문대 졸업 이하의 학력으로 전공구분이 없을 경우 전공은 기입하지 않아도 됨  
(예시1 : **고등학교** 00년 00월 졸업)  
(예시2 : **전문학사/학사/석박사** 00과(전공) 00년도 00월 졸업)

② 보유자격증

- 보유한 자격증에 대한 시행처와 취득연월을 자세하게 기재  
(예시 : 대한상공회의소 워드프로세스2급 06년 08월 취득)

③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④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지원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주요경력

- 예시된 마을프로그램관리자의 주요 담당업무 또는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상의 담당업무 관련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주요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연, 월 표시 필수)

⑥ 우대사항

- 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청년은 졸업일 기준),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차상위계층),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⑦ 기타 특이사항 : 채용희망마을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지원서외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필수)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3. 자격증 사본 각 1부 (자격증 보유자)
4. 경력증명서 각 1부 (경력 보유자, 경력별 각 1부)
5.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첨부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 지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2022년도 서변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자로서 다음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목적

구분	항 목	목 적
1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인식별 절차에 이용
2	전화번호(핸드폰 번호 포함)	.공지사항, 업무관련 서비스 정보제공 등
3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사항 (전공학과, 졸업 유무 등)	.응시자격 확인
4	본인의 우대사항 ※ 경력, 자격증, 기타 사항 등	.우대사항에 대한 확인
5	본인의 자기소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의 참고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 까지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예비합격자는 직원 계약 전 까지, 최종합격자는 계약 종료 시 까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서변정보화마을운영위원장 귀하**